

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

세정지원 대상

- '21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,500억원 미만(자산총액 2,000억원 이상 법인, 전문인적용역제공 법인의 경우 500억원 미만)인 「조특법」상 중소기업*으로서
 - * '21사업연도('21년 1~12월 중 사업연도 종료)를 기준으로 판단, 중소기업 기준 초과 후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규정(조특법 시행령§2②) 미적용
- '23년에 상시근로자 수*를 '22년 대비 2%·3%(최소 1명)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'일자리창출계획서'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한 법인
 - * 상시근로자 수 = 해당연도 매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/ 해당연도의 개월 수
 - 근로기준법§43의2에 따라 「채불사업주 명단공개」된 법인은 지원대상에서 배제

< 수입금액 규모별 일자리창출 기준비율 >

'21사업연도 수입금액	500억원 미만	500억원 이상 ~ 1,500억원 미만
일자리창출 비율	2% 이상	3% 이상

세정지원 내용

- 2021사업연도 법인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
 - * 일자리 창출을 기준비율 이상 이행하지 못한 경우 세정지원 배제

일자리창출 계획서 제출

□ 제출방법

- (인터넷)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에서 일자리창출계획서 작성·전송
 - * 홈택스 로그인(법인사업자 ID 또는 공인인증서) → 신청/제출 → 신청업무 →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

※ 증가인원수, 증가비율 등이 자동계산 되며, [민원신청 처리결과조회] 화면에서 일자리창출계획서 서식에 수록된 결과를 조회 및 출력 가능

- (서면) 우편접수, 세무서 민원실 방문접수

□ 제출기한 : 2022. 11. 30.(수)

